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75호, 2021.10.19. 공포, 2021.4.20.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신청절차, 데이터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와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제2조 및 제3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개최절차,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산업간 교류 및 융합기반 구축,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데이터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및 산업간 교류·융합기반 구축 시책 마련 시 시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구체화함

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보안대책(제11조 및 제12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안심구역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

마.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가치평가 신청 등(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가치평가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가치평가 절차, 가치평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가치평가 정보의 예외를 구체화 함

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및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면 아니되는 사업자를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데이터유통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데이

터 플랫폼 지원 사업 및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함

사.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기관 지정 등(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품질관리 사업을 구체화함

아. 데이터거래사의 경력·자격 및 교육과 등록 신청 등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데이터거래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력·자격 및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시간을 구체화하고,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절차를 규정함

자. 창업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보조금 지급 등(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창업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절차와 지원하는 비용 등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공표 및 보조금·장기대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협회의 설립(제31조 및 제32조)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협회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협회의 사업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업

무를 구체화함

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정
부의 구성·운영 등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

타. 권한의 위임·위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과태료의 부
과(제40조부터 제4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0. 00. ~ 0. 0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법 제5조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그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무국)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에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 간 교류 및 융합기반 구축 시책의 마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도의 마련, 투자의 확대 등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의 기반이 되는 사항
2.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시범 사업, 연구개발 등 사업화 관련 사항
3.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과 공유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책은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조정·협의
2. 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정·협의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 계획
2. 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구비할 것
2. 데이터분석·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데이터안심구역 관리실적 및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시설·설비 등 기술적·물리적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책임자의 지정, 접근 권한의 제한 등 관리적 조치
3. 데이터의 변경·접근 등의 기록관리 및 유출·훼손·파괴·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 데이터 가치평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2.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
4.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이하 “가치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 신청서를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치평가기관은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④ 가치평가기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가치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가치평가기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가치평가 통계 및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4.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16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17조(데이터 유통·거래기반 조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유통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상담·자문
2.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마련
3.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검증의 지원
5. 그 밖에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8조(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 유통·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보받은 가치평가 정보의 관리
3.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사업자 관련 정보의 관리
4. 법 제19조에 따른 플랫폼 간의 연계 지원
5. 법 제20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 플랫폼 지원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지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표준화의 지원
4.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플랫폼의 범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3. 제도적·기술적 실현 가능성
4.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중복 가능성
5.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가능성

6. 그 밖에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내용
2. 데이터의 구조
3.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체계
4. 데이터 생산·수집의 절차 및 과정
5. 그 밖에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다. 이 경우 데이터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등
2.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등
3.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체계의 유용성, 접근성 및 적시성 등
4. 데이터 생산·수집의 합법성 등
5. 그 밖에 데이터의 이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 데이터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조직을 확보할 것
2. 데이터 품질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갖출 것
3. 품질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등을 갖출 것
4.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인증절차에 대한 설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품질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한다.

④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23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

1항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 개발
2. 데이터 품질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 표준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 진단·개선 지원
5. 그 밖에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공공데이터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관련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

4.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일 것
 5.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제25조(데이터거래사 교육)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거래에 대한 수요 탐색·발굴, 시장조사·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링 교육
2.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3.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교육
4. 데이터 거래 관련 법·제도 교육
5.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 중개·알선, 데이터 이전·사업화 및 거래 윤리 교육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신청자를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해주어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창업 등의 지원사항)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교육 지원
2. 데이터 기반 기업의 운영 관련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실무 교육 지원
3.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의 발굴·육성·홍보 및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의 제도 개선, 창업 관련 고충처리 지원 창구 운영
5. 데이터 기반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제2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다. 공공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마.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인력 및 시설 등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실습 비용
4. 그 밖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인력·시설·장비·지원금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지도·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및 데이터사업자 매출 실적 등
2.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현황
3.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의뢰할 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의 지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재난의 예방·대응,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의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그 밖에 데이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원

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 지원
3.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 지원
4.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지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평가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6. 법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이동의 촉진 지원
7. 법 제18조의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지원
8.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의 지원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지원
1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지원
1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
13. 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지원
14. 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지원시책 마련 및 중소기업자 대상 사업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출연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실적
2. 지정 받은 업무의 실적과 내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50인 이상의 데이터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관련 기술 및 데이터산업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데이터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데이터 관련 기술 및 데이터산업 관련 통계의 개발·작성·수집 및 관리
4. 국내외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및 데이터사업자의 권익 보호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접수

2.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분쟁조정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④ 분쟁조정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서의 접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4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35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하기로 한 때에는 조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각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분쟁조정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하기로 한 때에는 조정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명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참여한 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 5일 전까지 출석요구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조정비용)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은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3.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5. 법 제32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및 관리·감독

제4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

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사무국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품질인증서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데이터거래사 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제22조제6항 관련]

1. 표지도형



2. 제도법

가. 기본형태

- 1) 데이터 인증 로고는 기본 로고와 한글명칭으로 구성하여 사용한다. 로고의 컬러, 폰트는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2) 값, 관리 인증을 획득한 경우 기본 형태 로고를 활용할 수 있다. 배경으로 인해 로고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로고와 회색 폰트 조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온라인 활용

- 1)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 또는 인증 획득 사실을 전파하기 위한 배너에 기본 로고와 한글 조합으로 활용 가능하다.
- 2) 로고와 폰트가 식별 가능할 정도로 크기를 확보하여 활용하며 어두운 배경색과 이용할 경우 BG컬러 사용기준에 맞추어 로고와 흰색 폰트를 이용하여 노출한다.
- 3) 인증 로고에는 링크를 연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서 또는 인증 획득 사실이 공표된 공지사항, 언론 기사 등으로 연결 가능하다.

다.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라. 표지도형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배경화면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검정색 또는 회색으로 할 수 있다.

마. 표지도형 내부의 "DATA Certified", "(데이터인증)" 의 글자 색상은 파란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데이터품질인증"과 "Certificate of Data~"의 글자는 회색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8조제1항 관련)

1.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분야 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을 것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을 것
다.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이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가. 데이터 분야 관련 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24시간 교육전용으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할 것
3. 교육과정
데이터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4.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데이터 분야 전문교육의 추진 실적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
5. 교육운영조직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6. 예산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500	700	1,000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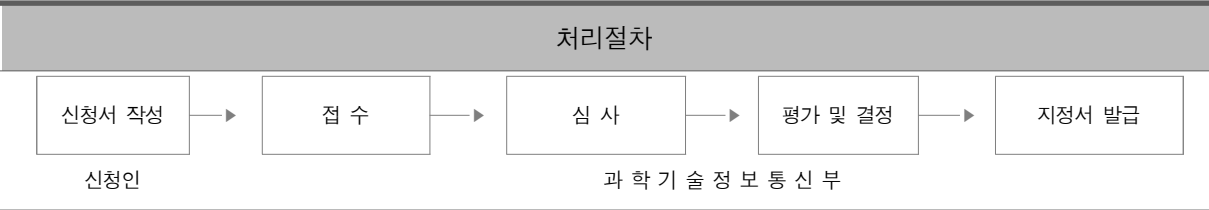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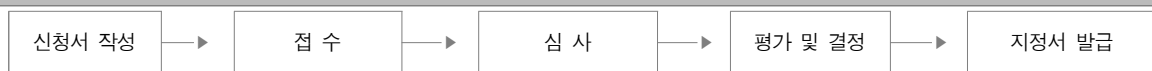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데이터 품질 인증서

- 대표자 성명:
- 상호 또는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 인증 대상:
- 인증 수준:
- 유효 기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소				
	e-Mail		전화번호		
경 력 및 자 격					
교 육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거래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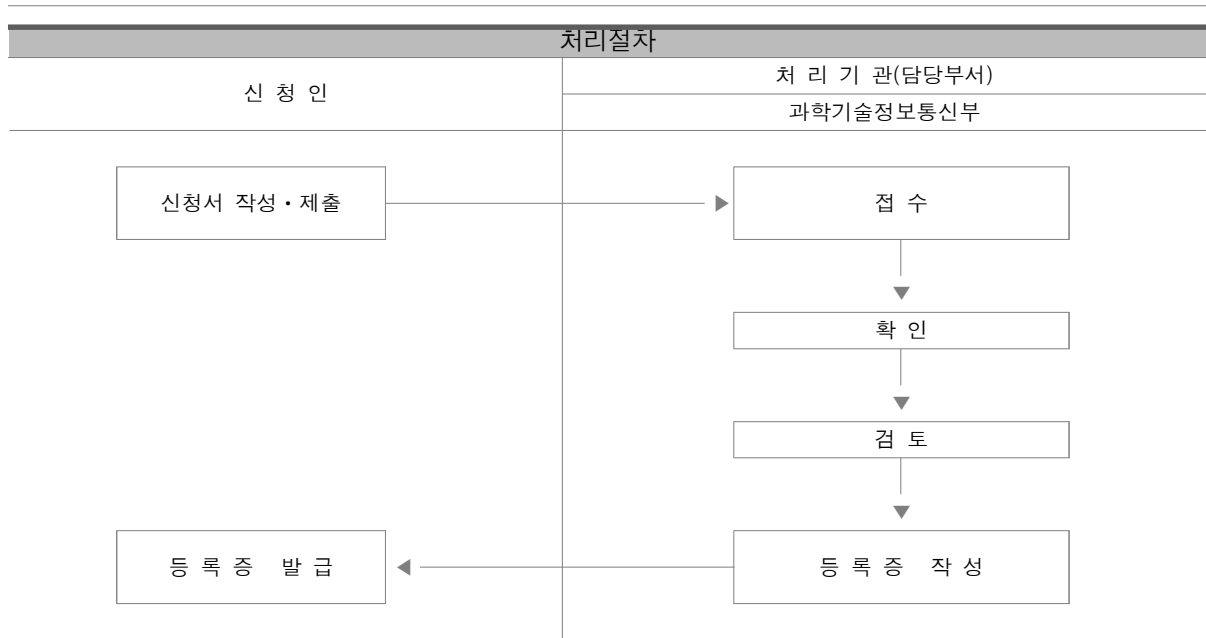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교육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등록번호 제 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

성 명:

생 년 월 일:

「데이터 산업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거래사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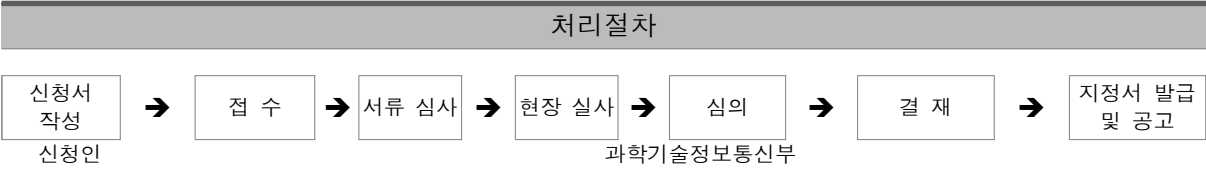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